

충남리포트 제228호

ChungNam Report

2016. 6. 30.

CONTENTS

< 요약 >

1. 기본소득 개념과 동향
2. 농민기본소득 논의 배경 및 필요성
3.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
4. 정책 제언

농민기본소득제,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

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, kcpark@cni.re.kr
 강 마 야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, kmaya@cni.re.kr

본 글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선택적 복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개념, 사례분석, 심층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과소·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농촌에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함

요 약

- 기본소득(basic income)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최근 들어 대안적 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음
 -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영구배당 형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고, 핀란드,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타진하고 있으며, 최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됨
-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특히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우선 필요
 - 농업·농촌은 개방 농정과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특히, 농가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직불제는 대농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농민의 대다수인 중소농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소득보장제의 도입 필요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제안함
 - 첫째, 충남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과 공간적,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개의 일반 마을과 특수마을(한계마을, 생태보전마을 등)을 설정해 시범사업을 실시
 - 둘째,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남도 자체 3농혁신특화사업비 등을 활용해 실시
 - 셋째,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가 분명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점점 확대
 - 마지막으로 충남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제 시범 실시가 단기간 내 실시가 어려울 경우 현재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

- 기본소득제(basic income guarantee)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임
 - 이 제도는 1797년 토마스 페인(Thomas Paine)이 토지정의(agrarian justice)에서 말한 ‘시민배당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,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‘사회적 배당’과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‘평생 사회수당’을 이론적 기초로 함

-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연계된 임금체계를 극복해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념으로 크게 보편성, 개별성, 무조건성 등 3가지 특성을 지님(강남훈, 2014)
 - 여기서 보편성은 부자에게도 준다, 개별성은 개인별로 준다, 무조건성은 노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을 뜻함. 또한 인구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고, 노인이나 아동 등 일부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 지급되는 소득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봄. 예를 들어,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노인기초노령연금도 여기에 해당됨

- 최근 들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모델로써 기본소득제가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
 - 예를 들어, 미국(알래스카주), 나미비아, 브라질(기본소득법 통과 그러나 미시행), 스위스(기본소득제 도입 국민투표 청원 부결), 핀란드, 뉴질랜드,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거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성남시와 서울시에서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
 - 최근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도 “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”에서 핀란드, 네덜란드,

스위스, 영국 등 해외 기본소득제 논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도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명시함(김은표, 2016)

●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

- 첫째,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인이 겪는 노동의 불안 때문임. 물론 국가나 사업단위에서 어느 정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에서 그 보장력 또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. 특히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가장 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
- 둘째, 저소득층, 사회적 약자,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임. 이미 무수히 많은 인권헌장과 헌법과 같은 법전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
- 셋째, 토지와 자연자원의 사적 점유에 대한 문제 제기임. 토지 및 자연자원(석유 등 지하자원 등)은 공유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민배당이 여기에 해당됨

농민기본소득제 논의 배경 및 필요성 ◀

02

-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제를 농민, 혹은 농촌주민에게 먼저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.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음

- 첫째, 계속되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촌은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
 - 1993년 말 UR 협상 타결시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95%였으나 2012년에는 57.5%까지 하락함. 2014년에는 61.5%로 다소 회복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
 - 또한 농업인과 농촌은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로 농촌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임.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획기적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음

- 둘째, 현재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직불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제도 마련 필요
 - 예를 들어,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.4%의 쌀농가가 전국 논면적의 58.2%를 경작함. 즉, 전체 쌀 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10%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. 그리고 전체 농가소득 가운데 직불금은 약 2.7%(2013년 기준)로 매우 미미한 상태임
 - 따라서 현재의 농업직불제로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가 설정은 소농(小農)을 도태시켜 오히려 농촌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효과가 있음
 - 또한 농촌의 소득개발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농촌개발사업도 결국 농촌의 고령

화와 역량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농가소득 증대에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임. 이 때문에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농민소득 보전이 요구되고 있음

● 셋째,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

- 농촌진흥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체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이용하여 비시장 재화의 가치 평가를 실시한 결과,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
- 그 중에서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도 67.7조에 달하는 것으로 밝힘. 구체적으로 보면, 논·농지의 홍수조절 효과가 댐 20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, 논·농지의 대기정화 효과는 1ha당 이산화탄소 22톤 흡수, 산소 16톤 방출 효과가 있다고 밝힘
- 그 외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, 아름다운 경관 가치를 더하면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다원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-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고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농가당 월 20만 원의 '생태 농촌 보존을 위한 농민수당(약칭 농민수당) 지급'을 요구하기도 했음(농어민신문, 2016년 3월 18일자)

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조사 ◀

03

1. 심층 인터뷰조사 개요

-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실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 충남도 내외 농업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조사 실시
 - 대상: 일반 농업인, 농민단체 관계자, 연구자, 농업관련 공무원 등 11명
 - 기간: 2015년 4월~7월
 - 내용: 농가소득에 대한 인식,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 정도, 농민기본소득제 필요성 및 요구 조건 등
 - 방법: 인터뷰는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 인터뷰 실시

2. 조사 결과

-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
 - 농촌주민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7명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역할,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응답함
 -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응답함

[표 1]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이유

항목	빈도	이유
① 도농 소득격차 심화	-	-
② 농업소득의 불안정	3명	- 소농에게도 어느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해줘야 함. 현재 사업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소농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음.
③ 안정적 노후 보장	1명	-
④ 농업인·농촌주민 역할농업의 공익적 기능)	7명	- 김영삼 정부 이래 대다수의 국민과 도시민, 기업인들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비판적 눈초리를 바로잡고 농업인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함. -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- 농업-사회적 그림자 노동, 농촌-양의 외부효과 - 먹거리 자급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기반 구축 -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농가 소득 보장 -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지킴이
⑤ 귀농인 등 신규 인력 유인	-	-

-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은 ‘개별 농업인’이라는 응답이 많았음
 - 다음으로 3명의 응답자가 ‘농촌주민 전체’라고 응답했고, 2명은 ‘개별 농가’라고 응답함

[표 2] 기본소득 필요시 그 대상

대상	빈도
① 농촌주민 전체	3명
② 개별 농가	2명
③ 개별 농업인	5명
④ 일정 연령대(예: 60대 이상 고령 농가)	1명

- 농민기본소득제의 적당한 금액은 농가당 매월 30~80만 원 수준으로 다양함
 - 만약 농민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적정할 것인지에 대해 농업인 개인별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정도, 30~50만 원, 50~80만 원이 각각 3명으로 같았음
 - 농가별로 지급할 경우에는 30~50만 원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음

[표 3] 농민기본소득 월 수령 적정 금액

1) 개인별		2) 가구별	
적정금액	빈도	적정금액	빈도
① 30만 원 정도	3명	① 30만 원 정도	-
② 30-50만 원	3명	② 30-50만 원	3명
③ 50-80만 원	3명	③ 50-80만 원	2명
④ 80만 원 이상	1명	④ 80만 원 이상	1명

- 만약 농촌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그 우선 대상지는 어디가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‘일반 농촌지역’이라고 응답함
 - 시범사업을 특별한 지역부터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

[표 4]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우선 대상지 및 이유

대상 지역	빈도	이유
① 일반 농촌지역	6명	-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. -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곳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. - 일반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.
② 낙후 농촌지역		-
③ 친환경농업지구	2명	-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
④ 생태환경피해보전지역	1명	-
⑤ 오지 등 원격지역	2명	-

-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는 정부행정 및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꼽음
 - 만약 충남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그 예산 출처는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, 응답자의 6명은 정부행정 및 복지예산을 꼽았고 다음으로 5명은 정부의 농림예산을 꼽음

[표 5] 농민기본소득의 예산 출처

예산 출처	빈도
① 정부농림 예산	5명
② 정부행정 및 복지 예산	6명
③ 충남도 및 각 시군 예산	1명
④ 사회공적기금	-
⑤ 기타	-

● 농민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10중 7명은 ‘여건에 따라 가능하다’고 응답함

- 정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함

[표 6] 농민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 평가

항목	빈도	이유
① 매우 희박	1명	- 세입조정의 어려움 때문
② 다소 희박	1명	-
③ 여건에 따라 가능	7명	- 정권의 성격이나 정책기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- 현재 마을이 수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농가소득과는 거리가 있음. 따라서 이 기금을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.
④ 가능성 높음	2명	-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곧 실행될 것임.
⑤ 잘 모름	-	-

-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민기본소득제가 아직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해 실시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임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가 농민기본소득제 실시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과 부정적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및 중지할 것을 제안함
- 앞선 문헌 연구와 설문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실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
 - 첫째, 사업 명칭은 “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”으로 함. 다만, 농민(농업인)의 범위를 <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>에 규정한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고령의 은퇴농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소규모 자작농도 포함함
 - 둘째,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는 비교 가능한 마을을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들 마을 간 결과를 비교분석해 그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함
 - 셋째, 충남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과 공간적,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개의 일반 마을과 특수마을(한계마을, 생태환경보전마을, 생태환경피해마을 등)을 설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함
 - 넷째,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가 분명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점점 확대함. 만약 충남도 차원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전국적 차원의 확대를 강구함
 - 다섯째,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실시의 예산은 충남도 자체 3농혁신특화사업비 등을

준용하고 시범사업의 효과가 분명할 경우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갈

- 마지막으로 충남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제 시범 실시가 단기간 내에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충남도가 역점사업 추진 중인 농업직불금제도 개선사업에 농민기본소득제 개념을 접목해 실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됨

박 경 철 책임연구원
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
041-840-1206, kcpark@cni.re.kr

*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“충남형 농촌주민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(2015)”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

◆ 참고 자료 ◆

- 강남훈. 2014a. “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: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‘기본소득’”, 『계간 민주』 10권,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: 136-157.
- 강남훈, 광노완 등. 2014.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. 고양: 박종철출판사.
- 강마야 등. 2014.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. 충청남도.
- 김성훈. “농가에 기본소득을!”. 프레시안 2015년 1월 8일자 보도.
- 김은표. 2016.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. 국회입법조사처 <이슈와 논점>제1148호.
- 남기엽. “농업·농촌·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, ‘농민기본소득’”. 토지+자유연구소 홈페이지 2015년 1월 16일 게재문.
- 박정철. 2013. “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”. 충남발전연구원 『정책포커스』 제38호: 1-7.
- 변현단. 2014. 농민에게 월급을!: 갑오년에 생각하는 새로운 농민혁명. 『녹색평론』 통권 제134권 (3/4월호): 164-176.
- 장경호. 2015. 농가소득 문제의 실태진단. <너름>제202권 이슈보고서.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.
- 정기석. 2014. 공익농민 월급형 기본소득제 실행모델 개발: 제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를 중심으로. 충남발전연구원.(미간행)
- 최광운. 2010. 모두에게 기본소득을: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. 서울: 박종철출판사.
- 추이즈위안, 김진공 옮김. 2014.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. 파주: 돌베개.
- 하승수. 2015.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. 대구: 한티재.
- 한국농업경제학회. 2014. 농가 특성별 맞춤형 경영안정화 방안 연구. 농림축산식품부.
- 한국농촌사회학회. 2014.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. 국회예산정책처.
- 헨리 조지, 김윤상 옮김. 1997. 진보와 빈곤. 서울: 비봉출판사.

충남리포트(2016년도)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6-01	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, 충남경제비전 2030	강현수 외 2명	2016.01.04
2016-02	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	김대호	2016.01.07
2016-03	민주주의 패스पोर्ट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	김욱 외	2016.01.14
2016-04	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	정종관	2016.01.20
2016-05	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	오용준	2016.01.28
2016-06	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	김용현	2016.02.04
2016-07	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	윤태범	2016.02.12
2016-08	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	이종윤 · 임재영	2016.02.17
2016-09	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	한상욱 · 임형빈	2016.02.19
2016-10	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	여형범	2016.02.24
2016-11	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	윤정미	2016.03.03
2016-12	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	장수명 외 2명	2016.03.10
2016-13	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	김태연 외 2명	2016.03.17
2016-14	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	이민정	2016.03.23
2016-15	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	홍원표	2016.03.30
2016-16	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	안연환 외 2명	2016.04.06
2016-17	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	김창수	2016.04.14
2016-18	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	장용철	2016.04.21
2016-19	충남 어촌 · 어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	이충훈	2016.04.28
2016-20	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	임형빈 · 한상욱	2016.05.06
2016-21	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	김원철 · 정민영	2016.05.12
2016-22	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	이관률	2016.05.19
2016-23	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	김필두 · 윤준희	2016.05.27
2016-23	충남 폐염전·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	장동호 · 이상진	2016.06.02
2016-24	2040년 충청남도 사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	심재헌	2016.06.08
2016-25	체계적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필요	명형남	2016.06.17
2016-26	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-도로,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-	김형철 · 장준용	2016.06.22

▣ 충남연구원 홈페이지(www.cn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▣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